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

의안 번호	20-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하신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 보훈 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 운영 활성화 및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, 명칭 및 위치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기능, 운영방향 및 운영방식(안 제4조~제6조)
- 다. 입주단체 및 운영협의회(안 제7조~제8조)
- 라. 시설의 이용 및 지원(안 제9조~제10조)
- 마. 양도금지 등,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(안 제11조~제13조)
- 바. 준용 및 시행규칙(안 제14조~제15조)

3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1) 「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
- 2) 「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12. 19. ~ 2020. 1. 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 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「국가보훈 기본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 따른 희생·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2. “국가보훈 관계 법령”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3. “보훈단체”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단체로 국가보훈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.
4. “입주단체”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명칭 및 위치) 시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(이하 “보훈회관”이라 한다)이라 하고, 위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에 둔다.

제4조(기능)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.

1.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
2.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
3.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5조(운영방향) ① 보훈회관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시설로서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보훈회관은 주민과 소통하는 지역밀착형 공간으로 운영하여야 하며, 정치 활동, 영리활동,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.

제6조(운영방식)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·운영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입주단체) 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
2.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

② 입주단체는 회원 수, 단체 활동, 시책 협력, 지역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.

제8조(운영협의회) ①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단체의 대표

들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마포구 운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,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제9조(시설의 이용)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
2.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10조(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
2. 프로그램 운영
3.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11조(양도금지 등) 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.

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, 물품,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.

제12조(원상복구)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(손해배상) ① 입주단체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.

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,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14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및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설치 및 운영 중인 보훈회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비용추계 요약

-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 -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(지원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보훈회관 운영 보조금 지원에 관한 연도별 소요예산
- 비용추계기간 : 2020. 1. ~ 2024. 12. (60개월)

3. 비용추계의 결과

(단위 : 천원)

구분		1차년도 (2020년)	2차년도 (2021년)	3차년도 (2022년)	4차년도 (2023년)	5차년도 (2025년 이후 계속)	합계
소요 예산	인건비	94,484	94,672	94,861	95,050	95,240	구비 100%
	운영비	104,020	104,228	104,436	104,644	105,853	
	계	198,504	198,900	199,297	199,694	201,093	

※ 물가 상승분(연도별 소요예산의 2.0%) 반영

4. 재원조달 방안

- 구비 예산 편성

5. 작성자 :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박일아 (☎ 3153- 8807)